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0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만희·고동진·정희용

엄태영 · 최은석 · 이양수

서천호 • 유상범 • 어기구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부정적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

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 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를 "일부 농업진흥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또는 제28조에"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 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 무상사용, 위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	
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u>제</u>	3 <u>일</u>
<u>28조에</u>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	부 농업진흥지역(「지방자치
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
	진흥지역을 말한다) 또는 제2
	8조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	③
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 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 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 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단서</u> 신설>

④ ~ ⑦ (생 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기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u>다만, 「지방자</u>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총 1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
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1. ~ 4. (현행과 같음)
5
<u>1년</u>

7. ~ 9. (생략)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② (생 략)

는 경우

6	
<u>1</u>	<u>년</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